

# 충청북도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지급 조례안

## 심 사 보 고 서

### 1. 심 사 결 과

1991. 12. 26

가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문교사회위원회

나. 제출 및 회부일자

○ 제출일자 : 1991년 12월 20일

○ 회부일자 : 1991년 12월 20일

다. 상정일자 : 제 74회 정기회

○ 제6차 문교사회위원회 (1991. 12. 26)

### 2. 제안 설명 요지

( 제안설명자 보사환경국장 김용덕 )

가. 제 안 사 유

도내 저소득 주민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저소득 주민의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장학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장학금지급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.

나. 주 요 골 자

- 장학금의 지급대상은 저소득주민 자녀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학생, 및 고등학생으로 함.
- 장학생의 선발은 시장·군수의 추천을 받아 도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발함.

- 장학기금은 일반회계 지원금으로 조성하고 장학금의 재원은 매년 적립금의 이자수입으로 충당함.
- 장학기금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하고 이자율이 높은 방법으로 예치함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( 전문위원 김영만 )

충청북도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지급 조례안을 검토한 바,

- 가. 본 사업은 저소득 주민의 자활능력을 배양코자 내무부의 지침에 의거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
- 나. 장학기금 조성의 근거를 마련하고 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,
- 다. 특히 장학사업의 조기시행을 위하여 본 조례안은 타 시,도보다 먼저 의회에 상정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음.

4. 질의 및 답변 요지 : 생략

5. 토론 요지 : 없음

6. 심사 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 의견 요지 : 저소득층의 자활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사업이지만 도에서 시행하는 각종 장학금을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수혜자의 형평을 유지하는 것이 좋겠음.

8.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: 별첨 조례안